|  |  |  |
| --- | --- | --- |
|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방법(시범시행)**  부령 제19호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방법(시범시행)>은 2020년 12월 25일 생태환경부 실무회의에서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이를 공포하여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생태환경부부장 황윤추(黃潤秋)  2020년 12월 31일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방법**  **(시범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 당 중앙, 국무원의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건설에 관한 결정과 배치를 실행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저탄소 발전 촉진을 위해 시장 메커니즘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추진하고,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및 관련 활동을 규범화 하기 위하여 국가의 유관 온실가스 배출통제에 대한 요구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탄소배출 할당량 배분 및 납부, 탄소배출권 등록·거래·정산, 온실가스 배출보고와 검증 등 활동을 포함한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와 관련 활동, 그리고 전술한 활동에 대한 감독관리에 적용된다.  **제3조**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및 관련 활동은 시장이 주도하고 점진적으로 진행하며 공평하고 공정하게 신의성실을 준수하는 원칙을 견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생태환경부는 국가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건설한다.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다루는 온실가스 종류와 업종 범위는 생태환경부가 정해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며, 또한 사회에 공개한다.  **제5조** 생태환경부는 국가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전국 탄소배출권 등록기구와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기구를 조직하고 설립하고, 전국 탄소배출권 등록시스템과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스템을 조직하고 구축한다.  전국 탄소배출권 등록기구는 전국 탄소배출권 등록시스템을 통해 탄소배출 할당량 보유, 변경, 납부, 말소 등 정보를 기록하며 또한 정산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 탄소배출권 등록시스템에 기록된 정보는 탄소배출 할당량의 귀속을 판단하는 최종 근거이다.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기구는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가 집중적이고 통일되게 이루어지도록 조직 및 전개한다.  전국 탄소배출권 등록기구와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기구는 정기적으로 생태환경부에 전국 탄소배출권 등록·거래·정산 등 활동, 기구 운영에 관한 상황, 보고해야 할 기타 중대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전국 탄소배출권 등록시스템과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스템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증하여야 한다.  **제6조** 생태환경부는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및 관련 활동의 기술규범 제정을 책임지고, 지방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배출 할당량 배분, 온실가스 배출보고와 검증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국무원의 기타 유관 부서와 함께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및 관련 활동에 대한 감독관리와 지도를 진행한다.  성(省)급 생태환경 주관부서는 해당 행정구역내에서 탄소배출 할당량 배분과 납부, 온실가스 배출보고 검증 등 관련 활동의 조직과 전개를 책임지고 수행하고, 또한 감독관리를 진행한다.  구(區)가 설치된 시(市）급 생태환경 주관부서는 성（省）급 생태환경 주관부서에 협조하여 유관 구체업무를 수행하고, 본 방법의 유관 규정에 따라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7조** 전국 탄소배출권 등록기구와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기구 및 소속 업무종사자는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및 관련 활동에 대한 기술규범을 준수하고, 국가 기타 유관 주관부서의 거래 감독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온실가스 중점배출단위**  **제8조** 온실가스 배출단위가 아래 조건에 부합할 경우, 온실가스 중점배출단위(이하 중점배출단위) 목록으로 지정해야 한다.  8.1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포함된 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8.2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26,000톤 이산화탄소 당량(當量)에 도달하는 경우  **제9조** 성(省)급 생태환경 주관부서는 생태환경부의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행정구역의 중점배출단위 목록을 확정하여 생태환경부에 보고하고, 사회에 공개한다.  **제10조** 중점배출단위는 온실가스 배출 통제, 탄소배출 데이터 보고, 탄소배출 할당량 납부, 거래 및 관련 활동 정보의 공개의무를 이행하고 생태환경 주관부서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존재하는 경우, 목록을 확정한 성(省)급 생태환경 주관부서는 관련 온실가스 배출단위를 중점배출단위 목록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11.1 연속 2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26,000톤 이산화탄소 당량(當量)에 미치지 않는 경우  11.2 조업중지, 폐쇄 또는 기타 사유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지 않아 더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경우  **제12조** 온실가스 배출단위가 중점배출단위 목록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목록을 확정하는 성(省)급 생태환경 주관부서가 사실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사실조사 결과 본 방법 제8조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중점배출단위 목록으로 지정해야 한다.  **제13조**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포함된 중점배출단위는 지방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시장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다.  **제3장 배분과 등록**  **제14조** 생태환경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통제 요구에 근거하고 경제성장, 산업구조 조정, 에너지구조 최적화, 대기오염물 배출 협동통제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소배출 할당총량의 확정 및 배분방안을 제정한다.  성(省)급 생태환경 주관부서는 생태환경부가 제정한 탄소배출 할당총량 확정 및 배분방안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내 중점배출단위에 대한 연간 탄소배출 할당량을 배분하여 규정한다.  **제15조** 탄소배출 할당량은 무상배분을 위주로 하나, 국가 유관 요구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유산 배분을 도입할 수 있다.  **제16조** 성(省)급 생태환경 주관부서는 탄소배출 할당량을 확정한 후 중점배출단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중점배출단위는 배분된 탄소배출 할당량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 근무일 내에 할당량을 배분한 성(省)급 생태환경 주관부서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성(省)급 생태환경 주관부서는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 근무일 내에 재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7조** 중점배출단위는 전국 탄소배출권 등록시스템에 계정을 개설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제18조** 중점배출단위가 합병, 분리 등 상황이 발생하여 단위명칭, 탄소배출 할당량 등 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소재지 성(省)급 생태환경 주관부서의 심사를 거쳐 전국 탄소배출권 등록기구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국 탄소배출권 등록기구는 전국 탄소배출권 등록시스템을 통해 변경등록을 진행하고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 국가는 중점배출단위, 기구 및 개인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자발적 의사에 따라 그가 확보한 탄소배출권 할당량을 말소하는 것을 장려한다.  자발적으로 말소된 탄소배출권 할당량은 국가 탄소배출 할당총량에서 동일한 양만큼 삭감하고 더 이상 분배, 등기 또는 거래를 진행하지 않는다. 말소 관련 현황은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4장 배출 거래**  **제20조**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하는 제품은 탄소배출 할당량이며, 생태환경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타 거래상품을 적절한 시기에 추가할 수 있다.  **제21조** 중점배출단위 및 국가 관련 거래규칙에 부합하는 기구와 개인이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거래주체이다.  **제22조** 탄소배출권 거래는 반드시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여야 하며, 협의 양도, 단방향 경매 또는 기타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기구는 생태환경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유효한 조치를 취해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온실가스 감축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고, 과도한 투기 거래행위를 예방하며,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제23조** 전국 탄소배출권 등록기구는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기구가 제공한 거래 결과에 따라 전국 탄소배출권 등기시스템을 통하여 거래 주체의 정보를 즉시 갱신해야 한다.  **제24조** 전국 탄소배출권 등록기구와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기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데이터를 적시에, 정확하고, 안전하게 교환해야 한다.  **제5장 배출검사 및 할당량 납부**  **제25조** 중점배출단위는 생태환경부가 제정하는 온실가스 배출 정산 및 보고 기술규범에 따라 해당 단위의 직전 년도 온실가스 배출보고를 작성하고 배출량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매년 3월 31일 이전에 생산경영장소 소재지의 성(省)급 생태환경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배출보고와 관련된 데이터 원시기록과 관리대장은 최소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중점배출단위는 온실가스 배출보고의 진실성, 완전성,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중점배출단위는 작성된 온실가스 배출보고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단, 국가비밀 및 상업비밀과 관련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 성(省)급 생태환경 주관부서는 중점배출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보고에 대한 검사를 조직하여 전개하고, 중점배출단위에 검사결과를 고지하여야 한다. 검사결과를 중점배출단위의 탄소배출 할당량 납부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성(省)급 생태환경 주관부서는 정부의 서비스 구매방식을 활용하여 기술서비스 기구에 위탁하여 검사서비스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기술서비스 기구는 제출된 검사결과의 진실성, 완전성,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27조** 중점배출단위가 검사결과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결과가 고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를 조직한 성(省)급 생태환경 주관부서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성(省)급 생태환경 주관부서는 재검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28조** 중점배출단위는 생태환경부가 정한 기간 안에 할당량을 배분한 성(省)급 생태환경 주관부서에 전년도 탄소배출 할당량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한 량은 성(省)급 생태환경 주관부서가 검사결과로 확인한 해당 단위의 전년도 온실가스 실제 배출량보다 많거나 같아야 한다.  **제29조** 중점배출단위는 매년 국가가 허가한 자발적 배출 감축량을 사용하여 탄소배출 할당량의 납부를 상계할 수 있다. 상계비율은 납부해야 할 탄소배출 할당량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관련 규정은 생태환경부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상계에 사용되는 국가가 허가한 자발적 배출 감축량은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할당량 관리에 포함된 배출 감축 프로젝트에서 기원할 수 없다.  **제6장 감독 관리**  **제30조** 상급 생태환경 주관부서는 하급 생태환경 주관부서의 중점배출단위 목록 확정,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및 관련 활동 상황에 대한 감독검사와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31조** 구(區)가 설치된 시(市)급 이상 지방 생태환경 주관부서는 중점배출단위의 온실가스배출보고 검사결과를 근거로 감독검사 중점사항과 빈도를 확정한다.  구(區)가 설치된 시(市)급 이상 지방 생태환경 주관부서는‘검사대상과 검사인원 임의 추출 및 결과 공개’ 방식을 도입하여 중점배출단위의 온실가스 배출 및 탄소배출 할당량 납부 현황을 감독 검사해야 하며, 관련 상황을 절차에 따라 생태환경부에 보고한다.  **제32조** 생태환경부 및 성(省)급 생태환경 주관부서는 직책에 따라 분업하여야 하며, 중점배출단위의 연간 탄소배출 할당량 납부현황 등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33조** 전국 탄소배출권 등록기구 및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기구는 국가 거래 감독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리스크 관리 메커니즘과 정보공시제도를 구축하며, 리스크 관리 예방방안을 제정하고, 탄소배출권 등기·거래·정산 등 정보를 적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전국 탄소배출권 등록기구 및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기구의 업무종사자는 직무상 편의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도모하거나 상업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 거래주체가 본 관리방법의 탄소배출권 등기·결산 또는 거래에 관한 유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전국 탄소배출권 등록기구와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기구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거래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5조** 대중, 언론매체 등이 중점배출단위 및 기타 거래주체의 탄소배출권 거래와 관련 활동을 감독하는 것을 장려한다.  중점배출단위 및 기타 거래주체는 생태환경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와 관한 활동 정보를 적시에 공개하여야 하고, 스스로 대중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36조** 공민, 법인 및 기타조직이 중점배출단위와 기타 거래주체가 본 관리방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구(區)가 설치된 시(市)급 이상 지방 생태환경 주관부서에 고발할 권리가 있다.  고발을 접수한 생태환경 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결과를 피드백 하며, 동시에 제보자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  **제7장 벌칙**  **제37조** 생태환경부, 성(省)급 생태환경 주관부서, 구(區)가 설치된 시(市)급 이상 지방 생태환경 주관부서의 관련 업무종사자가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및 관련 활동 수행과정에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익을 위한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상급 행정기구 또는 감찰기구가 시정을 명령하여 법에 따라 처분한다.  **제38조** 전국 탄소배출권 등록기구와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기구 및 소속 업무종사자가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태환경부가 법에 따라 처분하고 사회에 처리결과를 공개한다.  38.1 직무상 편의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도모한 경우  38.2 기타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익을 위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전국 탄소배출권 등록기구와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기구 및 소속 업무종사자가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업기밀을 누설하거나 기타 국가 거래 감독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9조** 중점배출단위가 온실가스 배출보고를 허위 또는 은닉하거나 온실가스 배출보고 의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생산경영장소 소재지의 구(區)가 설치된 시(市)급 이상 지방 생태환경 주관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한을 경과하여 시정하지 않는 경우, 중점배출단위 생산경영장소 소재지의 성(省)급 생태환경 주관부서에서 온실가스 실제 배출량을 추산하고 해당 배출량을 탄소배출 할당량 납부의 근거로 삼는다. 허위 또는 은닉한 부문은 다음 연도 탄소배출 할당량에서 동일한 양으로 감액한다.  **제40조** 중점배출단위가 기한 내에 탄소배출 할당량을 전량 납부하지 않는 경우, 생산경영장소 소재지의 구(區)가 설치된 시(市)급 이상 지방 생태환경 주관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2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한을 경과하여 시정하지 않는 경우, 체납된 부문에 대하여, 중점배출단위 생산경영장소 소재지의 성(省)급 생태환경 주관부서가 다음 연도 탄소배출 할당량에서 동일한 양으로 감액한다.  **제41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 구성의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유관 생태환경 주관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사법기구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8장 부칙**  **제42조** 본 관리방법에서 아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2.1 온실가스: 대기 중에서 적외선 복사를 흡수 또는 다시 배출한 자연 또는 인위적인 기체성분으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0), 수소불화탄소(HFCs), 풀플루오린화탄소 (PFCs), 육불화탄소(SF6) 및 삼불화탄소(NF3)를 포함한다.  42.2 탄소배출: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에너지 연소 활동, 공업 생산 과정, 토지 이용 변화 및 임업 등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하며, 외부에서 구매한 전력 및 열에너지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도 포함한다.  42.3 탄소배출권: 중점배출단위에 할당된 규정기한 내의 탄소배출 한도를 의미한다.  42.4 국가가 허가한 자발적 배출 감축량: 중국 경내의 재생가능에너지, 임업 온실가스 흡수원, 메탄 이용 등 프로젝트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계량화 검증하여 국가 온실가스 자원(自愿) 감축 거래등록시스템에 등록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의미한다.  **제43조** 본 관리방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碳排放权交易管理办法（试行）** 部令 第19号  《碳排放权交易管理办法（试行）》已于2020年12月25日由生态环境部部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21年2月1日起施行。  生态环境部部长 黄润秋 2020年12月31日  **碳排放权交易管理办法 （试行）**   1. **总  则**   **第一条**  为落实党中央、国务院关于建设全国碳排放权交易市场的决策部署，在应对气候变化和促进绿色低碳发展中充分发挥市场机制作用，推动温室气体减排，规范全国碳排放权交易及相关活动，根据国家有关温室气体排放控制的要求，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适用于全国碳排放权交易及相关活动，包括碳排放配额分配和清缴，碳排放权登记、交易、结算，温室气体排放报告与核查等活动，以及对前述活动的监督管理。  **第三条**  全国碳排放权交易及相关活动应当坚持市场导向、循序渐进、公平公开和诚实守信的原则。  **第四条**  生态环境部按照国家有关规定建设全国碳排放权交易市场。  全国碳排放权交易市场覆盖的温室气体种类和行业范围，由生态环境部拟订，按程序报批后实施，并向社会公开。  **第五条**  生态环境部按照国家有关规定，组织建立全国碳排放权注册登记机构和全国碳排放权交易机构，组织建设全国碳排放权注册登记系统和全国碳排放权交易系统。  全国碳排放权注册登记机构通过全国碳排放权注册登记系统，记录碳排放配额的持有、变更、清缴、注销等信息，并提供结算服务。全国碳排放权注册登记系统记录的信息是判断碳排放配额归属的最终依据。  全国碳排放权交易机构负责组织开展全国碳排放权集中统一交易。  全国碳排放权注册登记机构和全国碳排放权交易机构应当定期向生态环境部报告全国碳排放权登记、交易、结算等活动和机构运行有关情况，以及应当报告的其他重大事项，并保证全国碳排放权注册登记系统和全国碳排放权交易系统安全稳定可靠运行。  **第六条**  生态环境部负责制定全国碳排放权交易及相关活动的技术规范，加强对地方碳排放配额分配、温室气体排放报告与核查的监督管理，并会同国务院其他有关部门对全国碳排放权交易及相关活动进行监督管理和指导。  省级生态环境主管部门负责在本行政区域内组织开展碳排放配额分配和清缴、温室气体排放报告的核查等相关活动，并进行监督管理。  设区的市级生态环境主管部门负责配合省级生态环境主管部门落实相关具体工作，并根据本办法有关规定实施监督管理。  **第七条**  全国碳排放权注册登记机构和全国碳排放权交易机构及其工作人员，应当遵守全国碳排放权交易及相关活动的技术规范，并遵守国家其他有关主管部门关于交易监管的规定。  **第二章  温室气体重点排放单位**  **第八条**  温室气体排放单位符合下列条件的，应当列入温室气体重点排放单位（以下简称重点排放单位）名录：  （一）属于全国碳排放权交易市场覆盖行业；  （二）年度温室气体排放量达到2.6万吨二氧化碳当量。  **第九条**  省级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按照生态环境部的有关规定，确定本行政区域重点排放单位名录，向生态环境部报告，并向社会公开。  **第十条**  重点排放单位应当控制温室气体排放，报告碳排放数据，清缴碳排放配额，公开交易及相关活动信息，并接受生态环境主管部门的监督管理。  **第十一条**  存在下列情形之一的，确定名录的省级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将相关温室气体排放单位从重点排放单位名录中移出：  （一）连续二年温室气体排放未达到2.6万吨二氧化碳当量的；  （二）因停业、关闭或者其他原因不再从事生产经营活动，因而不再排放温室气体的。  **第十二条**  温室气体排放单位申请纳入重点排放单位名录的，确定名录的省级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进行核实；经核实符合本办法第八条规定条件的，应当将其纳入重点排放单位名录。  **第十三条**  纳入全国碳排放权交易市场的重点排放单位，不再参与地方碳排放权交易试点市场。  **第三章  分配与登记**  **第十四条**  生态环境部根据国家温室气体排放控制要求，综合考虑经济增长、产业结构调整、能源结构优化、大气污染物排放协同控制等因素，制定碳排放配额总量确定与分配方案。  省级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根据生态环境部制定的碳排放配额总量确定与分配方案，向本行政区域内的重点排放单位分配规定年度的碳排放配额。  **第十五条**  碳排放配额分配以免费分配为主，可以根据国家有关要求适时引入有偿分配。  **第十六条**  省级生态环境主管部门确定碳排放配额后，应当书面通知重点排放单位。  重点排放单位对分配的碳排放配额有异议的，可以自接到通知之日起七个工作日内，向分配配额的省级生态环境主管部门申请复核；省级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自接到复核申请之日起十个工作日内，作出复核决定。  **第十七条**  重点排放单位应当在全国碳排放权注册登记系统开立账户，进行相关业务操作。  **第十八条**  重点排放单位发生合并、分立等情形需要变更单位名称、碳排放配额等事项的，应当报经所在地省级生态环境主管部门审核后，向全国碳排放权注册登记机构申请变更登记。全国碳排放权注册登记机构应当通过全国碳排放权注册登记系统进行变更登记，并向社会公开。  **第十九条**  国家鼓励重点排放单位、机构和个人，出于减少温室气体排放等公益目的自愿注销其所持有的碳排放配额。  自愿注销的碳排放配额，在国家碳排放配额总量中予以等量核减，不再进行分配、登记或者交易。相关注销情况应当向社会公开。  **第四章  排放交易**  **第二十条**  全国碳排放权交易市场的交易产品为碳排放配额，生态环境部可以根据国家有关规定适时增加其他交易产品。  **第二十一条**  重点排放单位以及符合国家有关交易规则的机构和个人，是全国碳排放权交易市场的交易主体。  **第二十二条**  碳排放权交易应当通过全国碳排放权交易系统进行，可以采取协议转让、单向竞价或者其他符合规定的方式。  全国碳排放权交易机构应当按照生态环境部有关规定，采取有效措施，发挥全国碳排放权交易市场引导温室气体减排的作用，防止过度投机的交易行为，维护市场健康发展。  **第二十三条**  全国碳排放权注册登记机构应当根据全国碳排放权交易机构提供的成交结果，通过全国碳排放权注册登记系统为交易主体及时更新相关信息。  **第二十四条**  全国碳排放权注册登记机构和全国碳排放权交易机构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实现数据及时、准确、安全交换。  **第五章  排放核查与配额清缴**  **第二十五条**  重点排放单位应当根据生态环境部制定的温室气体排放核算与报告技术规范，编制该单位上一年度的温室气体排放报告，载明排放量，并于每年3月31日前报生产经营场所所在地的省级生态环境主管部门。排放报告所涉数据的原始记录和管理台账应当至少保存五年。  重点排放单位对温室气体排放报告的真实性、完整性、准确性负责。  重点排放单位编制的年度温室气体排放报告应当定期公开，接受社会监督，涉及国家秘密和商业秘密的除外。  **第二十六条**  省级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组织开展对重点排放单位温室气体排放报告的核查，并将核查结果告知重点排放单位。核查结果应当作为重点排放单位碳排放配额清缴依据。  省级生态环境主管部门可以通过政府购买服务的方式委托技术服务机构提供核查服务。技术服务机构应当对提交的核查结果的真实性、完整性和准确性负责。  **第二十七条**  重点排放单位对核查结果有异议的，可以自被告知核查结果之日起七个工作日内，向组织核查的省级生态环境主管部门申请复核；省级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自接到复核申请之日起十个工作日内，作出复核决定。  **第二十八条**  重点排放单位应当在生态环境部规定的时限内，向分配配额的省级生态环境主管部门清缴上年度的碳排放配额。清缴量应当大于等于省级生态环境主管部门核查结果确认的该单位上年度温室气体实际排放量。  **第二十九条**  重点排放单位每年可以使用国家核证自愿减排量抵销碳排放配额的清缴，抵销比例不得超过应清缴碳排放配额的5%。相关规定由生态环境部另行制定。  用于抵销的国家核证自愿减排量，不得来自纳入全国碳排放权交易市场配额管理的减排项目。  **第六章  监督管理**  **第三十条**  上级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加强对下级生态环境主管部门的重点排放单位名录确定、全国碳排放权交易及相关活动情况的监督检查和指导。  **第三十一条**  设区的市级以上地方生态环境主管部门根据对重点排放单位温室气体排放报告的核查结果，确定监督检查重点和频次。  设区的市级以上地方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采取“双随机、一公开”的方式，监督检查重点排放单位温室气体排放和碳排放配额清缴情况，相关情况按程序报生态环境部。  **第三十二条**  生态环境部和省级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按照职责分工，定期公开重点排放单位年度碳排放配额清缴情况等信息。  **第三十三条**  全国碳排放权注册登记机构和全国碳排放权交易机构应当遵守国家交易监管等相关规定，建立风险管理机制和信息披露制度，制定风险管理预案，及时公布碳排放权登记、交易、结算等信息。  全国碳排放权注册登记机构和全国碳排放权交易机构的工作人员不得利用职务便利谋取不正当利益，不得泄露商业秘密。  **第三十四条**  交易主体违反本办法关于碳排放权注册登记、结算或者交易相关规定的，全国碳排放权注册登记机构和全国碳排放权交易机构可以按照国家有关规定，对其采取限制交易措施。  **第三十五条**  鼓励公众、新闻媒体等对重点排放单位和其他交易主体的碳排放权交易及相关活动进行监督。  重点排放单位和其他交易主体应当按照生态环境部有关规定，及时公开有关全国碳排放权交易及相关活动信息，自觉接受公众监督。  **第三十六条**  公民、法人和其他组织发现重点排放单位和其他交易主体有违反本办法规定行为的，有权向设区的市级以上地方生态环境主管部门举报。  接受举报的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依法予以处理，并按照有关规定反馈处理结果，同时为举报人保密。  **第七章  罚  则**  **第三十七条**  生态环境部、省级生态环境主管部门、设区的市级生态环境主管部门的有关工作人员，在全国碳排放权交易及相关活动的监督管理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由其上级行政机关或者监察机关责令改正，并依法给予处分。  **第三十八条**  全国碳排放权注册登记机构和全国碳排放权交易机构及其工作人员违反本办法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生态环境部依法给予处分，并向社会公开处理结果：  （一）利用职务便利谋取不正当利益的；  （二）有其他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行为的。  全国碳排放权注册登记机构和全国碳排放权交易机构及其工作人员违反本办法规定，泄露有关商业秘密或者有构成其他违反国家交易监管规定行为的，依照其他有关规定处理。  **第三十九条**  重点排放单位虚报、瞒报温室气体排放报告，或者拒绝履行温室气体排放报告义务的，由其生产经营场所所在地设区的市级以上地方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处一万元以上三万元以下的罚款。逾期未改正的，由重点排放单位生产经营场所所在地的省级生态环境主管部门测算其温室气体实际排放量，并将该排放量作为碳排放配额清缴的依据；对虚报、瞒报部分，等量核减其下一年度碳排放配额。  **第四十条**  重点排放单位未按时足额清缴碳排放配额的，由其生产经营场所所在地设区的市级以上地方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处二万元以上三万元以下的罚款；逾期未改正的，对欠缴部分，由重点排放单位生产经营场所所在地的省级生态环境主管部门等量核减其下一年度碳排放配额。  **第四十一条**  违反本办法规定，涉嫌构成犯罪的，有关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依法移送司法机关。  **第八章  附  则**  **第四十二条**  本办法中下列用语的含义：  （一）温室气体：是指大气中吸收和重新放出红外辐射的自然和人为的气态成分，包括二氧化碳（CO2）、甲烷（CH4）、氧化亚氮（N2O）、氢氟碳化物（HFCs）、全氟化碳（PFCs）、六氟化硫（SF6）和三氟化氮（NF3）。  （二）碳排放：是指煤炭、石油、天然气等化石能源燃烧活动和工业生产过程以及土地利用变化与林业等活动产生的温室气体排放，也包括因使用外购的电力和热力等所导致的温室气体排放。  （三）碳排放权：是指分配给重点排放单位的规定时期内的碳排放额度。  （四）国家核证自愿减排量：是指对我国境内可再生能源、林业碳汇、甲烷利用等项目的温室气体减排效果进行量化核证，并在国家温室气体自愿减排交易注册登记系统中登记的温室气体减排量。  **第四十三条**  本办法自2021年2月1日起施行。 |